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꼬꼬잉판

· 3월 3주차 ·

해설편

일주일에 5문항으로 가볍게 끝내는
생활과 윤리 주간지!

“Are You Ready For This?”

점심생운 3월 3주차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김영우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류성민 (건국대 철학과)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안재현 (건국대 경영학과)
양승언 (강원대 윤리교육과)
유영우 (대인고)
이동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현승 (울산여고)
진해인 (교육학 전공)
탁성용 (서울시립대 철학과)
홍찬혁 (인하대 경영학과)
김보민
문인성
서지영
이수진

외 1인

펴 낸 일 2024년 03월 17일
펴 낸 곳 점심생운™
저 자 점심생운™
문 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 3월 3주차 ·

해설편

2025학년도 「점심 생운」 3월 3주차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영역 ·

생활과 윤리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②	5	⑤		

해설

1. 밀과 칸트의 서양 사상의 접근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값은 밀, 음은 칸트이다. 밀은 쾌락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한다. 더불어 밀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능한 최대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므로써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행위의 동기가 도덕 원칙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동기주의자로서,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즉 칸트는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며 느끼는 경향성(행복, 동정심 등)을 도덕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찾기]

③ 칸트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에 따르면 목적으로 행위하는 대상에서 행위자 자신을 제외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함을 의미하며 그의 모든 행위에 항상 자신이라는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 전체에게, 단지 우연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또한 칸트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의 형태로 정언 명령을 제시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격체[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1. 보편성 정식(제1명령)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2. 인격성 정식(제2명령)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도록 행위하라.

[씨마스 윤사 교과서] [칸트, 『실천이성비판』]

[오답 피하기]

① 밀이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더 바람직한 쾌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쾌락의 양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밀 역시도 인정한다. 그러나 밀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이 그렇지 않은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만약 양적으로 많으나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쾌락과, 양적으로 적으나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쾌락이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밀의 주장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 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밀, 『공리주의』]

또한 밀은 이러한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쾌락에 대해 그 둘을 똑같이 잘 알고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훨씬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저급한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밀, 『공리주의』]

② 밀이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밀은 행위 공리주의자로, 유용성의 원리를 각각의 개별적 행위에 적용하여 그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따라서 밀은 개별 행위가 야기하는 쾌락의 양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본다. 행위 규칙에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며,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발생시키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본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 원리를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 ④ 칸트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란 오직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되어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한 행위라고 본다. 더불어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일지라도 행위의 동기에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이 개입된다면 도덕 법칙에 의한 필연성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도덕 법칙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의식하며 행위자 자신의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준칙, 격률)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도덕 법칙을 의무에서 준수하는 것이지, 명령 없이 저절로 하고 싶게 된 동기에서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한 행위의 필연성이다.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2021학년도 수능 (윤사)]

- ⑤ 밀과 칸트가 모두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밀은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쾌락을 증가시킨다면 도덕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질적으로 낮은 쾌락만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오히려 고통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질이 낮은 쾌락으로 단기적인 만족에는 이를 수 있더라도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밀, 『공리주의』]

칸트는 어떤 행위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동기 중심적 행위인지를 판단하여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 어떤 행위가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였다고 해도 도덕 법칙을 필연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것이다.

[보편적인 도덕] 준칙에는, 곧 행위들을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작품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거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 예컨대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종류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2. 루소, 칸트, 베카리아의 교정적 정의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살인을 저지른 개인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계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본다. 칸트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칸트는 응보론적 관점에서 범죄와 동등한 형벌이 범죄자에게 가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당시 개인이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이며, 강도만이 보장된 사형보다 지속도도 보장된 노역형이 더 큰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다.

[정답 찾기]

- ① 루소가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루소는 사회 방위론적 관점에서 형벌론을 논하는데, 이는 즉슨 형벌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몇몇 위험, 심지어 몇몇 인명 피해를 수반한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루소, 『사회 계약론』]

다시 말해, 루소는 살인자를 사회에 방치하게 되면 계약자[시민]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을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칸트는 사형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칸트는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에 어긋나는 것, 즉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칸트는 이를 통상적

으로 ‘시민 사회를 위한 또 다른 선(칸트는 형벌을 선이라고 본다)’이라고 명명하는데, 칸트의 형벌론에서 ‘시민 사회를 위한 또 다른 선’은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 또는 이의 결과에서 실현될 수 있으나, 결코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오답 피하기]

② 칸트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가 ‘처벌’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처벌을 받을 행위, 즉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칸트의 ‘의욕’ 관련한 보충설명은 하단을 참고.)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은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이는 평가원 기출에도 꾸준히 출제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칸트 ‘범죄자 의욕’ 관련 기출 선지》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2017학년도 6평, 2020학년도 9평, 2021학년도 수능]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X)
[2017학년도 6평, 2022학년도 9평]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2021학년도 9평, 2023학년도 6평]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이다.
[2023학년도 9평(변형)]

《칸트 ‘범죄자 의욕’ 보충 설명》

* 앞서 말했듯 칸트의 ‘의욕’ 선지는 매해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아 꼭 숙지해야 한다.

칸트의 ‘의욕’과 관련하여 주로 출제되는 선지가 요구하는 것은 ‘범죄를 의욕했는가?’와 ‘처벌을 의욕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욕’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개념 숙지가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의욕(意欲) 「명사」
 「1」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
 「2」 「심리」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의지)
 「3」 「철학」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의지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일.

우리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히 ‘-를 의욕하다’라는 것을 ‘-를 원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want의 개념보다 will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 우리가 흔히 ‘의욕을 잃다[상실하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그렇다면 다시 칸트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앞서 말한 두 명제, ‘범죄를 의욕’, ‘형벌을 의욕’중 범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범죄를 의욕’한다는 것은 곧 ‘범죄를 원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적절하지만, ‘형벌을 의욕’한다는 것은 ‘형벌을 원하다’는 의미와 같으니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국가의 경우 형벌을 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범죄자에게 부과될 형벌이 범죄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형벌로서 가치가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부과되어서는 안된다.(이는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형벌론에서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 칸트의 선지에 ‘형벌을 의욕’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바로 오답으로 두는 편이 낫다. (예외는 없으니 안심할 것.)

루소의 입장에서 해당 선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형벌/범죄를 의욕한다’는 것은 칸트의 선지이다.

③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형벌은 보편적인 당위의 원리, 즉 도덕 법칙을 기본 이념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의 제2정식, ‘인격성 정식’이 형벌의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정언 명법]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주석은 이해를 위해 삽입. [칸트, 『윤리형이상학』]

교정적 정의를 응보로 해석한 칸트는 '형법은 정언 명령'이라고 단언하며,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가해져야 할 뿐, 범죄 예방이나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금성 생운 교과서]

이를 통해 칸트는 사형이 살인자의 (범죄로 인한)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는 살인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칸트는 사형을 살인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천재 생운 교과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로서(엄밀히 말하면 공리주의자는 아니다. 유용성을 중시하는 유용주의가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베카리아 이후에 등장한 이론. 하지만 교육과정상 공리주의자로 보아도 무방함.) 형벌은 보편적 도덕 법칙, 즉 유용성의 원리[공리의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

오직 '필요'만이 여러 욕망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부터 공통적 효용, 즉 공리의 관념을 발생시켰다. 이 공리가 인간적 정의의 기초인 것이다.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종류의 법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베카리아: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2019학년도 수능]

- ④ 루소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민을 보호하는 것, 즉 사형을 집행(혹은 추방형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루소에 따르면 사형의 대상, 즉 살인자는 더이상 시민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적, 혹은 배신자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루소의 입장에서 이들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 따라서 죄인이 사형을 당할 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루소, 『사회 계약론』]

루소: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X)

[→ 사형은 시민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님]

[2024학년도 수능]

- ⑤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만,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형벌론을 논한다. 하지만 당대에 널리 알려진 사회 계약론자들과 달리, 베카리아는 개인이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베카리아는 그 누구도 기꺼이 소중한 생명권을 양도할 사람은 없으며, 생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든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적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반면 루소는 사회 계약 당시 개인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이를 통해 국가는 권위를 지니고, 법률로써 개인을 통제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들에게 없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넘길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풀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잘못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 권리가 있다.

[루소, 『사회 계약론』]

반면 칸트는 베카리아와 동일하게 사회 계약 당시 국가에 개인의 생명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하는 것이며,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그렇다면 칸트는 생명권도 양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형제에 옹호적인 입장을 보일까. 이는 형벌[형벌권]과 동의[사회 계약]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칸트의 사회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현상적 인격이 아닌, 예지적 인격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나 사회를 경험하기 전 ‘이성[예지적 인격]’이 맺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회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성’은 선의지를 지니고 있어, 범죄에 대한 판단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명확히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칸트는 만약 ‘이성’이 범죄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추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계약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 ‘나는 처벌되기를 원한다’는 범죄자의 약속을 처벌 권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면 ‘나를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범죄자에게 위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범법자가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3. 노직과 롤스의 분배 정의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같은 노직, 음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최초 취득과 양도, 이전, (부정의의) 교정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배타적 권리인 소유권의 정당함을 강조한다. 롤스는 사회 구조가 기본적 정의의 원칙에 의해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원칙은 제 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제 2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따른다.

[정답 찾기]

ㄴ.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노직은 개인들이 지닌 소유물을 얻는 과정에서 취득 및 양도의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역시 공정하다고 본다.

개인들은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노직: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2017학년도 9평]

- ㄷ.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곧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물론 이러한 정의관은 지극히 애매하며 따라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롤스, 『정의론』]

제2원칙 : The Equality Principle(평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를 만족시켜야 허용 가능하다.

[롤스, 『정의론』 요약]

[오답 피하기]

- ㄱ.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은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개인이 지녔다고 본다. 이는 배타적인 권리로, 국가 혹은 타인이 개인의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두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 좁은 기능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된다.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감을 고취시킨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ㄹ. 노직의 입장이 아닌, 롤스만의 입장이다. 노직은 정의의 원칙이 개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사회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차등의 원칙은 예컨대 소득세와 재산세 제도 및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그것은 개개의 구체적 거래나 분배에 적용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지엽적 결정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배경적 구조에 적용된다.

[롤스, 『질서정연한 사회』]

4.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론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주장하며, 이를 원조의 기본 이념으로 본다. 싱어는 빈국에 관심을 가지면 기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도덕 의무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롤스는 정치·문화적 수준이 결여되어 있는 ‘고통 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본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는 오직 ‘고통 받는 사회’만을 대상으로 행해야 하며,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찾기]

②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이익 평등의 고려 원칙에 따라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조 당사자와 원조 대상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조 당사자가 입을 해악이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크면 원조할 의무는 없다. 싱어에게 있어 원조의 조건은 원조 주체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싱어: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2017학년도 9평]

어떤 사람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자신의 친척이 절대빈곤에 빠지도록 버려두는 것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싱어, 『실천 윤리학』]

[오답 피하기]

①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비용과 편익을 대비하는 과정의 필요성은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동의한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싱어: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2021학년도 6평]

싱어(O):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2022학년도 6평]

③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원조 대상 선정 시 천연 자원 보유 여부나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롤스는 원조 대상을 적정 수준의 정치적 문화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 점에서 천연 자원이 결여되어 있거나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 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들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롤스, 『만민법』]

④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원조를 통해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인권이 보

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그래서 롤스는 원조의 방법으로 '인권의 구현'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롤스: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2019학년도 수능]

- ⑤ 싱어와 롤스 모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싱어와 롤스 모두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라고 주장하였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절대적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싱어와 롤스에게 해외 원조는 조건부 의무로서 원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혹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선지에 대한 싱어의 입장은 두 가지의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원조 대상이 겪는 고통이 절대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라면, 이를 고려해 원조할 필요는 없다.

둘째, 원조의 효과를 약화시킬 경우 원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조의 경우에도 공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싱어는 만일 원조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원조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최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생각할 때,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싱어, 『실천 윤리학』]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이는 이러한 나라의 빈곤한 시민들에게는 매우 고약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싱어, 『실천 윤리학』]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만을 원조 대상으로 본다. 롤스에 따르면, 고통 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전통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에 의해 원조를 받아야 한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롤스, 『만민법』]

5.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위법 행위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진정한 다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인 적하는 의견에 반대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ㄷ.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공적 정의관]에 입각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공적 정의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롤스, 『정의론』]

나아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기초라고 주장한다.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롤스(O):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2018학년도 6평]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란 불복종자가 그러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공적 행위이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저항 사태를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복종자의 진지한 신념임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경식, 『개방 사회의 사회 윤리』]

- ㄹ. 상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상어는 공리주의자로서 공리주의 원칙(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어는 공리의 원리에 입각하여(공리주의적 계산을 통해)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어: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상어: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상어: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한다.

[2024학년도 6평]

[오답 피하기]

- ㄱ.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행위라고 보지만 양심에 근거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에 근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롤스, 『정의론』]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은 ‘단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저항은 시민 불복종이 아닌, ‘양심적 거부’이다. 양심적 거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민 불복종과 차이를 보인다.

롤스의 ‘양심적 거부’

1.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지 않는다.
2.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다.
3. 공개 석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
4. 단지 양심적인 이유로 명령에 거부하거나 법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5. 법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 '개인의 양심'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6. 정의와 같은 정치적인 원리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롤스, 『정의론』 요약]

상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상어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양심에서 찾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양심’이 아닌 ‘옳음’의 판단에 따라 시민 불복종을 진행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다고 본다.

법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자신의 양심을 따르라!”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점[어떤 행위가 옳은 일인가에 대한 확실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양심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다.

[상어, 『실천 윤리학』]

- ㄴ. 롤스는 법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이 시민 불복종의 충분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롤스는 준법의 의무, 그리고 (가상적)사회 계약에서 이룬 합의에 따라 어느 정도 부정의한 법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롤스(O):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2020학년도 수능]

롤스(X):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2020학년도 수능]

물론 롤스는 부정의한 법이 지나치게 심각한 정도라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롤스, 『정의론』]

** 수고하셨습니다 **

◎ 오류 및 오타 문의 :

lunchethics01@gmail.com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